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유)

제목 신고에 대한 회신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 2015서소0745

사 건 명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조사인 : 에스케이텔레콤(주)

1. 피조사인이 2014.11월부터 TV 등을 통해 T가족포인트를 광고하여 신규 가입자를 유인하고 2015.2.14. 포인트 적립 종료를 통보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위 사건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광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거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기만적인 광고행위 여부

- T가족포인트 광고시 예측이 어려운 중단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표기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들의 피조사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선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조사인이 T가족포인트를 광고하면서 그 중단가능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피조사인이 T가족포인트 혜택을 도입하고 변경한 배경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 미래부 등의 정책 변경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조사인의 T가족포인트 표시·광고에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국 T가족포인트 관련 광고에 당시 예측이 어려운 동 서비스의 중단가능성 등을 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오인성이 있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